

동물복지기본법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8
----------	-------

발의연월일 : 2026. 7. 28.

발 의 자 : 서삼석 · 윤준병 · 허성무
정준호 · 이정문 · 박용갑
홍기원 · 문대림 · 문정복
문금주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있음.

이에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존중하고, 종 고유의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2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8조).
- 라. 동물복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둠(안 제9조).
- 마.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
- 바.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위탁사업 수

행 등의 사업과 국가의 출연·보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동물복지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여 동물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2. 동물은 종(種)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되어야 한다.
3. 동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통, 공포 및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동물복지”란 동물이 종별 특성과 생애 단계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고, 고통·공포·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환경에 놓이지 않으며, 종 고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 변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동물복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의 날) ①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복지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9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9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복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 동물복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시·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동물복지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매년 수집·조사·분석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봉사동물 중 국가소유 봉사동물의 마릿수 및 해당 봉사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5의2. 「동물보호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 등 실험동물의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8.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9. 「동물보호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복지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1조에 따른 동물복지 실태조사와 동물복지 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국가동물 복지정보시스템(이하 “동물복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동물복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자에게 동물복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복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동물복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 자료·정보의 범위와 보유·이용, 제5항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물복지 정책의 연구 및 조사
2.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 지원
3.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동물 구조·보호 등 지원
4. 「동물보호법」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관리 지원
5. 동물 보호·복지 증진 관련 민간 활동의 지원
6.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의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니면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진흥원 설립 당시의 원장은 제1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진흥원의 설립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동물복지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한 동물복지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복지위원회 및 시·도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동물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조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례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2장(제6조, 제7조 및 제8조)을 삭제한다.

제80조제2항 중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동물복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94조 및 제9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제4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
다)에서 「동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